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5,655,980	17,269,679
일반회계	556,873,808	16,706,214
특별회계	18,782,172	563,465
기타특별회계	18,782,172	563,465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906,391	27,192
건축진흥특별회계	121,757	3,65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0,000	9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448,596	163,458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015,549	150,466
수질개선특별회계	64,200	1,92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9,727	21,292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04,132	3,124
상수도특별회계	6,381,820	191,45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860,94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